

	보 도 자 료		
	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		

담당기관	금융위원회	자본시장조사단	김홍식 단장(2156-3300), 윤송이 사무관(2156-3334)
	금융감독원	자본시장조사1국	김현열 국장(3145-5550), 정규중 팀장(3145-5566)
배포부서	금융위원회 대변인실(2156-9543~48), 금융감독원 공보실(3145-5786,5790)		
배 포 일	2015. 12. 9. (수)		총 3 매

제 목 :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

1. 조치 개요

- 증권선물위원회는 '15. 12. 9.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미공개정보 이용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

2. 주요 위반 내용

- 상장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추징금 부과라는 정보를 이용, 자기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
 - 상장법인 A사의 자금업무를 총괄하던 등기이사 甲은 동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법인세 추징금 부과라는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,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A사 자기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

[(붙임) 'A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' 참조]

3. 투자자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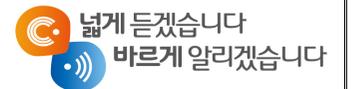
-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
 - 아울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

<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>

- ☞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/제보 전화 (☎ 02-2156-3333)
- ☞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(<http://www.cybercop.or.kr>) 접속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, <http://www.fss.or.kr>



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

1. A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

가. 사건의 개요

- 상장법인의 자금총괄 임원이 당해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결과 법인세 추징금 부과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기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사건임

나. 조사결과

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

- 상장법인 A사의 자금업무를 총괄하던 등기이사 甲은 당해 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'세무조사결과 법인세 추징금 부과'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,

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A사가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

다. 조치내용

고 발 : 甲 [A사 前 등기이사]

문의 :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5팀장 정규중
(☎02-3145-5566)